

제정	KS_M_NEW_2020_4067	고형 바이오연료 - 함수율 측정 - 전건법 - 제1부: 함수율 - 기준시험법
제정	KS_M_NEW_2020_4068	고형 바이오연료 - 겉보기 밀도 측정
제정	KS_M_NEW_2020_4069	고형 바이오연료 - 펠릿과 브리켓의 내구성 측정
제정	KS_M_NEW_2020_4070	고형 바이오연료 - 펠릿 시료의 미세분 측정
제정	KS_M_NEW_2020_4071	고형 바이오연료 - 회분 측정
제정	KS_M_NEW_2020_4072	고형 바이오연료 - 발열량 측정
제정	KS_M_NEW_2020_4073	고형 바이오연료 - 탄소, 수소 및 질소 함량 측정
제정	KS_M_NEW_2020_4074	고형 바이오연료 - 해리된 펠릿 입도 분포
제정	KS_M_NEW_2020_4075	고형 바이오연료 - 황 및 염소 함량 측정
제정	KS_M_NEW_2020_4076	고형 바이오연료 - 미량 원소 측정

※ 표준내용은 e-나라표준인증(www.standard.go.kr)에서 확인 가능

2. 제정 사유

- 목재펠릿의 품질분석 방법의 고형 바이오연료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

3. 주요 제정 내용

- 본 제정은 목재펠릿의 품질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는 표준으로, ‘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’(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20-2호) 부속서11 목재펠릿의 품질분석 방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국제표준 13건에 부합하는 표준입니다.

4. 의견 제출

- 이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,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2월 0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 - 의견제출자 성명 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부 목재화학연구과 정한섭(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, 전화: 02-961-2744, FAX: 02-961-2769, E-mail: hsj17@korea.kr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,

●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-40호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「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」(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-26호, 2020. 8. 6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20년 10월 8일

국립환경과학원장

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

「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별표 제1호(신규화학물질)의 고유번호 “2016-65”란, “2016-116”란, “2016-143”란, “2016-144”란, “2016-146”란, “2016-147”란, “2016-149”란, “2016-153”란, “2016-182”란, “2016-350”란, “2016-540”란, “2018-157”란, “2018-390”란, “2019-131”란의 화학물질명칭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, 고유번호 “2015-76”란, “2016-13”란, “2016-89”란, “2016-108”란, “2016-110”란, “2016-134”란, “2016-870”란,

“2017-100”란, “2017-101”란, “2017-422”란, “2017-477”란, “2017-548”란, “2017-683”란, “2017-767”란, “2017-1082”란, “2017-1117”란, “2017-1125”란, “2017-1199”란, “2017-1230”란, “2018-157”란, “2018-233”란, “2018-390”란, “2018-700”란, “2019-15”란, “2019-131”란, “2019-277”란, “2019-311”란, “2019-314”란, “2019-323”란, “2019-357”란, “2019-411”란, “2019-497”란, “2019-661”란, “2019-677”란, “2019-687”란, “2019-715”란, “2019-805”란, “2019-912”란, “2019-948”란, “2019-949”란, “2020-69”란, “2020-106”란, “2020-158”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고유번호 “2020-169”란 다음에 고유번호 “2020-170”란부터 “2020-266”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.

별표 제2호(기존화학물질)의 고유번호 “2020-026”란 다음에 고유번호 “2020-027”란부터 “2020-050”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게재 생략

○ 개정고시문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(www.nier.go.kr>법령정보>고시)에 게재되어 있음

●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-15호

김해시 일반수도사업 인가(변경)

경상남도 김해시 명동정수장 증설을 위한 일반수도사업을 「수도법」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(변경)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

2020년 10월 8일

낙동강유역환경청장

1. 사업명 : 명동정수장 증설
2.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: 김해시장(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(부원))
3. 사업의 목적 및 개요
 - 김해시 명동권역의 용수수요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명동정수장을 증설 및 개량하여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함
4. 사업시행지의 위치
 -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736-1 일원(명동정수장 내)
5. 급수구역·급수인구 및 급수량

급수구역	급수인구(인)	1일 1인당 급수량(lpcd)
김해시 장유동(1,2,3동), 진영읍, 진례면, 한림면, 주촌면 일원	294,398	352

6.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
 - 사업시행기간 : 2020. 10 ~ 2023. 10.
 - 급수시작 예정일 : 2023. 10.
7. 수용·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·지목·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: 붙임 참조
8.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: 붙임 참조